

의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 49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1998.12.11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,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동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동사무소 정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(제15조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(제36조 및 제37조)에서 각각 규정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
- 예산조치 : 불필요
- 합 의
 - 행정자치부 자제12200-397('98.10.19) 기구·정원관련조례·규칙모델표준안
 - 서울특별시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('98.10.21)에 합의
-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- 기 타 : 행정자치부조례규칙모델표준안보완사항

2.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,
 - (안 제1조) : 동사무소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목적으로함을 규정하고,
 - (안 제2조) : 동사무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의견
 - 위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,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,
 - 행정자치부의 기구·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이 시달되었고, 서울특별시 조직12200-1100('98.11.24) 조례규칙모델표준안보완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, 일부 미비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3. 참고자료

- 지방자치법 제102조
- 서울특별시조례규칙모델보완지침(조직12200-1100)

《관 계 법 령》

지방자치법

제102조(행정기구)

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94·3·16, 94·12·20>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